

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(권향엽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7412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3. 12.

발 의 자 : 권향엽 · 오세희 · 남인순
이주희 · 진성준 · 강준현
김종민 · 최민희 · 정일영
임미애 · 이재관 · 고민정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가 공단의 승인을 받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국가데이터처의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활동 중인 764만 1,749개 대상 중 고용보험 가입 대상 자영업자의 수는 674만 7,159명임에 비해, 실제 고용보험 가입 유지자는 5만 3,075명으로 가입률은 0.8%에 불과한 실정임.

이에 자영업자 고용보험 당연가입제도를 도입하고, 실제 소득에 기반하여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를 산정하도록 하고, 자영업자의 실업수급 기준을 근로자와 균등하게 설정함으로써 자영업자의 생활안정과 사회안전망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13조제2항, 제14조제2항, 제

15조제7항, 제41조제1항 단서, 제50조제3항, 제58조제2호가목, 제69조의2 단서 삭제, 제69조의3제1호, 제69조의4제1항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권향엽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7413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②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을 시작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.

제1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②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0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.

제15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⑦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자신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.

제41조제1항 단서 중 “제50조제3항 단서 및 제4항”을 “제50조제3항제2호 및 제4항”으로 한다.

제5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③ 피보험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한다.

1. 근로자인 피보험자: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(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로 고용된 기간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

2. 자영업자인 피보험자: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폐업 당시의 적용
사업의 존속기간

제58조제2호가목 중 “전직 또는 자영업”을 “전직”으로 한다.

제69조의2 단서를 삭제한다.

제69조의3제1호 중 “1년 이상”을 “6개월 이상”으로 한다.

제6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의 산정기
초가 되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제3항에 따라 고시된 보수
액을 전부 합산한 후에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”를
“과세소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연 매출 10억원 이상의 사업
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에 대하여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을 이 법
의 시행일로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3조(피보험자격의 취득일) ① (생 략)</p> <p>② <u>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 제1항 및 같은 조 제12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7조제3호에 따라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.</u></p>	<p>제13조(피보험자격의 취득일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을 시작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.</u></p>
<p>제14조(피보험자격의 상실일) ① (생 략)</p> <p>② <u>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 제10항 및 같은 조 제12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.</u></p>	<p>제14조(피보험자격의 상실일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0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.</u></p>
<p>제15조(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) ① ~ ⑥ (생 략)</p> <p>⑦ <u>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다.</u></p>	<p>제15조(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) ① ~ ⑥ (현행과 같음)</p> <p>⑦ <u>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자신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.</u></p>

제41조(피보험 단위기간) ① 근로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. 다만,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제50조제3항 단서 및 제4항에 따른 피보험기간으로 한다.

②·③ (생략)

제50조(소정급여일수 및 피보험기간) ①·② (생략)

③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(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로 고용된 기간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으로 한다. 다만,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폐업 당시의 적용 사업에의 보험가입기간 중에서 실제로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.

④·⑤ (생략)

제58조(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) 제40조에도 불구하고

제41조(피보험 단위기간) ① -----

-----.

-----제50조제3항제2호 및 제4항-----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50조(소정급여일수 및 피보험기간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피보험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한다.

1. 근로자인 피보험자: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(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로 고용된 기간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

2. 자영업자인 피보험자: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폐업 당시의 적용 사업의 존속기간

④·⑤ (현행과 같음)

제58조(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) -----

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영업
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
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년
이상일 것

2. ~ 4. (생략)

제69조의4(기초일액) ① 자영업자
인 피보험자이었던 수급자격자
에 대한 기초일액은 다음 각
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
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의 산정
기초가 되는 고용산재보험료징
수법 제49조의2제3항에 따라
고시된 보수액을 전부 합산한
후에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
금액으로 한다.

1.·2. (생략)

② (생략)

-----6개월
이상-----

2. ~ 4. (현행과 같음)

제69조의4(기초일액) ① -----

-----과
세소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
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.

1.·2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